

GANGJIN 

Web Contents



목차

목차	2
공중위생업 시설기준 - 세탁업	3
세탁업	3
시설기준	3
영업자 준수사항	3

공중위생업 시설기준

식품위생업 시설기준

위생업소현황

· 목욕장업 · 이용업 · 미용업 · 숙박업 · **세탁업** · 건물위생관리업

세탁업

⊙ 시설기준

1. 세탁용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2.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(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구획(칸막이 · 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되어야 한다.

⊙ 영업자 준수사항

-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는 유기용제의 누출이 없도록 항상 점검하여야 하고, 사용 중에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세탁물에는 세탁물의 처리에 사용된 세제·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남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세탁업자는 업소에 보관 중인 세탁물에 곰팡이 등이 생성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GANGJIN

Web Contents

